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51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원이 · 박지원 · 이해식
김남근 · 서영석 · 한준호
허영 · 서삼석 · 김승원
오세희 · 정진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은 국내 보호에 집중되어 안보 위협 물품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쟁·사변·천재지변, 교역상대국의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권익 불인정, 교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제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미흡하여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로서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GATT 협정 규정상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준

용하여 현행 법령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3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를 “전쟁·사변·천재지변 또는 그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 보호, 제품의 원산지·품질·특성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관행의 방지 및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7.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8.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9.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10.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11.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 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호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u>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u>	1. _____ _____ _____전쟁·사변·천재지변 또는 그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2. ~ 5. (생략) <u><신설></u>	2. ~ 5. (현행과 같음) 6. <u>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 보호, 제품의 원산지·품질·특성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u>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 관련

관행의 방지 및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7.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8.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9.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10.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11.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 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도·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 ⑦ (생 략)	----- ----- ----- -----. 1.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 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u> 2.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호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u> ④ ~ ⑦ (현행과 같음)
--	---